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3D프린팅 활용 범죄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홍보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0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리나라의 3D 프린팅 산업 현황	2
2. 3D프린팅 활용한 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4
3. 모의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15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6.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페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생산·소지·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우리나라의 3D프린팅 산업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3D프린팅 산업의 기업체 수, 종사하는 인력, 시장규모 등을 발표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통계자료는 발간연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에 따르면, 3D프린팅 기업체는 2021년 312개, 2022년 320개, 2023년 352개로 증가하였으며, 인력규모는 2021년 1,865명에서 2023년에 1,900명으로 비슷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3D프린팅 산업의 연도별 현황(2021~2023년)>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연도별 현황			증감률 (B-A)/A
	2021년	2022년 (A)	2023년 (B)	
기업체	312	320	352	10.0
인력	1,865	1,855	1,900	2.4
시장규모	5,075	5,997	6,125	2.1
- 장비	2,662	3,267	3,219	△1.5
- 소재	424	451	604	33.9
- SW	897	1,015	928	△8.6
- 서비스	1,093	1,264	1,374	8.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도별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2025. 6.

- 3D프린팅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2022년 5,997억원에서 2023년 6,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재 분야에서 2022년 451억원에서 2023년 604억으로 전년 대비 3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의 3D프린팅 산업의 규모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접근성과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사제충포 등의 제작 가능성 또한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산업 발전과 함께 3D프린터의 정밀도와 출력 재료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이용한 사제충포 제작이 보다 정교하고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 3D프린팅 활용한 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3D프린팅 기술의 확산은 산업적 혁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총기, 칼 등 무기 제작과 같은 불법적인 활용 가능성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3D프린팅을 활용한 총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3D프린팅을 활용한 테러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준수의무) (생략) <신설>	제16조(준수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

	<u>1조에 따른 모의충포를 말한다)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홍보</u>
	<u>3.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유통</u>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을-----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	2. 제16조제1항을-----

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3.·4. (생략) ② (생략)	-----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사제 총기로 인한 피격에 사망하였음. 범인은 3D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총기 부품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총기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¹⁾.
-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된 총기는 기존의 일반 총기와는 달리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제조자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특히, 2023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3D프린팅 결과물의 94.3%가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보안시스템으로 탐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총기는 금속 탐지기를 쉽게 회피할 수 있어 공항, 정부청사, 주요 건물 출입구 등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탐지가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실제 범죄에 악용될 경우

1) 뉴스1, "'3D 프린팅 사제 총기' 규제 필요"...총기 제작 테러방지법 발의, 2025. 6. 13., <https://m.news.nate.com/view/20250613n20565?mid=m03&list=recent&cpd=>

추적과 수사가 기존 총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음. 이처럼 3D프린팅 총기는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범죄 및 테러 위협이 되고 있음.

<3D프린팅에 주로 활용하는 소재 현황>

(단위: %, 전체 표본=707개)

구분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기타
비율	94.3	8.2	2.0	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2025. 6.

○ 또한, 고성능 3D프린터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일반인조차도 비교적 손쉽게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총기 규제로 인해 총기 범죄 발생률이 매우 낮은 국가에도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총기 제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임.

○ 동 개정안의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신설 부분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2)에 따른 대테러센터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활동 수행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된 업체 및 그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³⁾에 따른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 동 개정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0)(이하 ‘연관 법률안’이라 한다)의 안 제10조제2항의 3D프린팅을 이용한 테러수단의 제작·유통·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교육·홍보와 연관되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하는 내용(‘참고자료’ 참조)임.

- 해당 부분의 신설을 통해, 3D프린팅을 활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업체에서 생산된 장비를 활용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 범죄 추적이 용이하게 되며, 3D프린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3D프린팅을 활용한 범죄를 시도하려는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총기 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작물 정보 등 영업기밀 유출 우려

- 우선, 3D프린팅 업체의 제작물 정보 등 영업기밀의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동 개정안에 따르면, 3D프린팅을 활용한 모의총기 제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3D프린팅 기업의 명단, 제품 종류 및 특성 등이 데이터 수집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D프린팅 산업이 우주·항공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3D프린팅 업체의 영업 기밀 유출로 이어져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 3D프린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3D프린팅 시장은 미·중 기술패권 가속화에 따른 자국 보호주의 강화와 국가간 공급망 재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완화에 따른 경제회복과 우주/항공 등 고부가가치 응용산업 내 3D프린팅 수요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40.6% 성장한 180억 달러를 기록했다⁴⁾고 설명하고 있음. 이처럼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는 보안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이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으로

4)Wholers Associates, 3D Printing and Additive Manufacturing, 2023

인하여 영업기밀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따라서, 3D프린팅을 활용한 모의충기 방지의 필요성과 제작물 등 영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적 판단이 필요함.

□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권 검토 필요

- 우선,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서는 삼차원프린팅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 제공에 있어 해당 사업자의 협력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관련 사업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자료 요청권 등에 대한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법의 사업자 의무 및 자료 요청 규정 예시>

법률	구분	자료요구권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률」	사업자 의무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u>창업기업등과 그와 관련된 자</u>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u>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u>
	자료요청	제62조(자료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u>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사업자 의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u>건축주 및 발주자</u> 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u>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자료요청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u>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u>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률」 등 타 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협력이나 노력 등 준수의무 조항과 정부나 기관의 자

료요청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에서도 사업자의 준수 의무 규정인 제16조가 아닌 별도의 조항에 자료 제출 요청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타 법의 입법례에서 정부나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권과 함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사업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연관 법률안과 조치 사항 용어 일치 필요

- 다음으로, 동 개정안과 연관 법률안의 조치사항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은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 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유통’에 대해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관 법률안에서는 이를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로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유통’은 생산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과 활동에 중점을 두어 외부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부적 운영에 초

점을 두는 개념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용어의 일치 필요성이 있음.

<동 개정안과 연관 법률안의 조치 사항 차이>

개정안	연관 법률안
제16조(준수의무) ② 삼차원프린팅 사업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하여 테러이용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유통·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생략)
3. <u>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유통</u>	3. <u>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u>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삼차원프린팅 업체와 제작물에 대한 DB를 구축, 사용·유통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⁵⁾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업 설문조사(2025. 8. 21 ~ 8. 22.) 결과 총 33개 사 중 29개사가 반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서비스기업의 출력물에는 수요기업의 공정 등에 활용 가능한 부품·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 기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삼차원프린팅 서비스 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임. 특히, 동 개정안은 제작물 전체에 대한 DB 구축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게 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3D 프린터는 이용정보 수집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정보의 신뢰성 담보가 어려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제시하며,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3D프린팅 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의무 등 부분은 3D프린팅 범죄 발생 시 사용 장비의 추적이 용이해져 총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입법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으나, 3D 프린팅 제품 정보에 관련된 영업기밀의 유출로 관련 산업 저해 우려가 있으며,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권 검토가 필요하며, 소관 부처의 모든 업체와 제작물에 대한 DB를 구축, 사용·유통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인 것으로 보임.

2. 모의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3D프린팅을 활용한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한 3D프린팅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업체가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3D프린팅 관련 사업자들에게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준수의무) (생략) <신설>	제16조(준수의무)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별도 검토) 2.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모의총포를 말한다)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홍보 3. (별도 검토)

□ 검토사항

- 동 개정안의 제16조제2항제2호 신설 부분은 대테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6)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에 3D프린팅 관련 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의 윤리적 사용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 3D프린팅 기술은 가치 중립적 도구이며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사업자가 해당 기술의 범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심각한 총기 범죄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을 통해 관련 업체에게 모의총포의 위험성을 교육·홍보하여 사업자가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제작 등 의뢰에 대한 1차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내부의 사제 총기 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자에 대한 총기 범죄 가능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D프린팅 활용 고객에게 총기 제작 등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차원프린팅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이미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교육에는 모의총포 제작 금지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테러 센터 등 다른 기관이 추가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중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모의총포 관련 교육·홍보는 사업자에게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범죄가 의심되는 의뢰를 1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해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나, 소관 부처의 안전교육에 이미 모의총포 제작 금지 등이 포함돼 있어 대테러센터 등이 추가로 교육·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의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자료> 연관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0)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u>“테러이용수단”이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을 말한다.</u>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② (생략)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④ (생략)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u>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허가를 요청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 ----- -----

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테러이용수단
및-----

-----.
② 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하여 테러이용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유통·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충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3.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② (생 략)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u>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 ----- ----- <u>테러이용수단</u>----- ----- ----- ----- ----- -----. ② (현행과 같음)
--	--